

자동차성능·상태점검 신고서

(신규 변경 폐쇄)

접수번호	접수일자	발급일자	처리기간	20일
신고인	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을 말합니다)	전화번호		
		팩스번호		
	사업자명(법인명)	사업자등록번호		
		법인등록번호		
	주소 또는 법인 소재지			
	사업장의 소재지			
변경내용	변경 전	변경 후		
변경·폐쇄 사유				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

제 123조의3제2항 제 123조의4제2항 에 따라

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의 신고 변경신고 폐쇄신고를 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1.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자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23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 1부 나. 별표 24의2에 따른 시설·장비 및 성능점검원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. 변경 및 폐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(변경신고 및 폐쇄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3.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 신고증 1부(폐쇄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을 증명하는 서류(국가기술자격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